

## 2008 대구지방토론회

조정·중재신청 기사에 나타난 오보 유형과 특성

# 목 차

· 토론회 개요 .....	2
· 토론회 개관 .....	3
· 주제발표 내용(요약) .....	4
· 토론내용 .....	19

##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08. 7. 10.(목) 10:30 ~ 13:30
- 장 소 : 대구 그랜드호텔(2층 다이너스티B홀)
- 주 제 : 조정·중재신청 기사에 나타난 오보의 유형과 특성
- 발 표 자 : 정 결 진 위원(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사 회 자 : 권 태 인 위원(전 대구방송 보도국장)

## ■ 토론회 개관

이번 대구지방토론회는 언론중재제도를 홍보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바람직한 언론중재제도의 운용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며, 조정대상이 된 기사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취재 보도되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결진 위원(대구중재부 중재위원,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 『조정·중재신청 기사에 나타난 오보의 유형과 특성』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대구중재부에 접수된 신청사건의 기사를 분석하여 오보에 대해 정의하고 오보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분석적 방법을 통해 오보의 유형과 특성을 규명하였다.

이어 권태인 위원(전 대구방송 보도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시간에는 대구지역의 언론계, 학계, 법조계, 관계, 시민단체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 주제발표 내용(요약)

### 『조정·중재신청 기사에 나타난 오보의 유형과 특성』

- 대구중재부 신청 사건을 중심으로 -

#### I. 문제의 제기

언론의 취재 보도는 언론매체와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언론매체와 국민 간에 존재하는 이 묵시적 동의는 언론매체가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올바른’ 보도를 제공하고, 국민은 언론매체가 성실하게 이 약속을 지켜줄 것이라는 데 합의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묵시적 합의의 존재는 바로 올바른 보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올바른 보도’는 흔히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한 보도는 사실에 입각해 바르게 보도하는 것이다. 기자들은 보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 현장을 찾아 가 직접 취재를 하기도 하고 또 믿을 만한 기록이나 자료, 관련서류를 찾아 확인하고, 관계 전문가나 권위자, 목격자들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인용을 통해 보도의 정확성을 기하려고 한다. 때문에 정확한 보도에는 그 기사의 정보원(source of information)이 밝혀져 있다.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올바른 보도라면 그렇지 못한 보도는 그릇된 보도, 오보가 된다. 오보는 언론에 대한 신뢰에 금을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사상의 자유공개시장에서의 언론자유에 대한 확신마저 부정하게 할 수 있다. 또 오보는 의사소통채널을 붕괴시키고 언론이 국민과 한 묵시적 합의 약속을 깨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암적 존재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 대구중재부에 접수 처리된 사건의 조정·중재

신청 기사에 나타난 오보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본다.

## II. 오보의 정의와 발생원인

### 1. 오보의 정의

‘그릇된 보도’는 흔히 허보·오보·과장보도·왜곡보도·편파보도·불공정보도·부정확한 보도 등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다. 이것은 그릇된 보도가 일어나는 요인들 가운데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불리는 경우이다.

오보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그릇되게 보도 되어진 경우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보도의 잘못으로 인해 쓰이고 있는 허보·오보·과장보도·왜곡보도·편파보도·불공정보도·부정확한 보도 등은 언론이 보도를 그릇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대체로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또 진실한 보도를 하지 않는 보도이다. 따라서 오보란 ‘사실이면서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면서 진실한 보도를 제외한 모든 보도’라고 할 수 있다.

### 2. 오보의 발생원인

오보가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Greenberg와 Tannenbaum은 오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그들의 연구에서 기자가 자신의 신념과 갈등을 일으키는 정보에 접하게 될 때 오보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기자 자신이 평소에 취재에 임하는 가치관과 신념에 반하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을 때 오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오보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기자의 취재보도와 관련된 개인의 미숙성과 언론의 산업적 속성과 관

련된 내외적 구조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자의 미숙성은 기자의 취재활동에 있어서 부족한 점 및 과실 뿐만 아니라 사건을 꿰뚫어 보는 선견지명의 결여, 상대방의 의식적인 기만에 의한 오인, 뉴스 평가의 잘못 등 전문지식의 부족, 편집과정에서 확인 미비 등은 대부분 기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고 있다. 기자의 귀책사유에서 벗어나 기자 개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마감시간이나 상업주의에 의한 경쟁, 취재관행, 광고주의 압력, 권력의 간섭, 취재원의 고의적 정보조작이나 통신기사의 확인 어려움 등은 언론의 산업적 속성과 관련된 구조적 요인으로 오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닌 요인들이다.

### III. 오보의 유형과 특징

오보의 유형은 크게 객관적 오보와 주관적 오보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되고 있다. 객관적 오보는 주로 이름, 철자, 주소, 장소 등과 같은 사실 확인을 잘못 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아 나타나는 오보의 현상이며 또 공표사실이나 발표문, 보도자료 등에 내재되어 있는 사실 확인의 미비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객관적 오보는 주로 언론인의 확인부재가 그 원인인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주관적 오보는 부정확한 제목, 과대·과소표현, 생략 등과 같이 현재적이든 잠재적이든 혹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언론인의 주관적 견해가 개입되어 나타나는 오보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IV. 조정·중재신청기사에 나타난 오보의 유형과 특징

언론보도를 두고 분쟁을 벌이거나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는 대개가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가 신청되는 보도기사는 그 형태가 어떠한 그 전제는 뉴스의 보도가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즉, 조정 또는 중재가 신청된 보도기사는 사실이면서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면서 진실한 보도가 아닌 오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조정·중재신청기사에 나타난 오보의 발생원인과 유형을 찾아보고 그 특징을 기술해보고자 한다. 오보의 유형과 특징을 찾아보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대구중재부에 신청된 기사를 중심으로 분류해 그 유형과 특징을 찾아보기로 했다. 때문에 조정 또는 중재신청기사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앞서 기술한 오보의 원인과 유형의 기준을 중심으로 기사를 분류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 1. 연구문제

조정·중재를 신청한 기사들이 어떠한 오보발생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그 특징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 : 조정·중재를 신청한 기사는 어떠한 오류(오보 발생원인)를 가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2 : 조정·중재를 신청한 기사는 어떠한 유형의 오보를 구성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3 : 조정·중재를 신청한 기사에 나타난 오보는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

## 2. 연구방법

## 1) 분석대상 및 방법

분석대상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대구중재부에 조정·중재 신청된 기사 가운데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년 동안 조정 신청된 모든 기사인 47개 기사를 대상으로 기사내용을 분석했다. 신문이 33개 기사(70.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방송의 경우는 14개 기사로 29.8%를 차지하고 있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 2) 조사측정항목

이 연구의 기본취지는 조정·중재 신청된 기사들이 어떠한 오류와 유형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항목들을 측정항목으로 하여 기사를 분류해 그 특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신청기사의 중심주제, 신청기사의 보도공정(균형)성, 신청기사의 정보원의 활용출처, 신청인의 주장에 나타난 신청기사의 오류 유형, 신청기사의 오보 유형 등으로 구분해 조사했다.

### (1) 신청기사의 중심주제

기사의 중심주제는 신청된 기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주된 주제가 무엇인가에 따라 정치, 정책·행정, 경제, 환경, 교육, 여성·복지, 의료, 범죄·사건·사고, 재난, 문화, 연예·오락, 인물·미담, 동정, 기타 로 분류하였다.

### (2) 신청기사의 보도 공정(균형)성

기사의 보도가 공정(균형)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상반되는 의견이나 이해관계

의견이 담겨있는 기사를 공정한 기사로, 그렇지 않고 어느 한 쪽만의 입장을 담고 있거나 전혀 담고 있지 않는 기사를 공정하지 않은 기사로 분류하였다.

### (3) 정보원(news sources)의 활용출처

기사에서 어떤 정보원을 활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정보원의 활용 출처 형태를 나누었다. 기사내용에서 정보원이 사람인 경우는 개인으로, 기관명만 밝혀진 경우는 기관으로, 보고서 등 자료에 의존한 경우는 자료로 분류하여 다중으로 검토했다.

### (4) 신청인 주장의 오류유형

기사에서 신청인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이름, 직위, 사실적 자료 등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또는 확인미비로 잘못된 사실 혹은 정보를 인용하여 정정 또는 반론을 요구하는 유형을 객관적 오류유형으로, 그리고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이거나 실제 발언한 것이 아니라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경우, 기자가 임의로 관련사항을 보도하거나 취재 과정에서 주관적 해석을 통해 과대·과소 표현을 한 경우, 취재과정에서 습득한 정보 중 특정사항을 생략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정 또는 반론을 요구하는 유형을 주관적 오류유형으로 분류했다. 또 보도하기를 원하지 않은 사실 또는 동의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기타오류로 분류했다.

신청인이 주장한 오류를 보다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관련 정보가 아닌 잘못된 정보를 인용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인용하며 특정 인물이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또 적절하지 못한 보도 자료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잘못된 정보 확인으로, 취재과정 중 관련 사실의 확인 부재 또는 미비로 인해 특정 사실이 생략되거나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실 확인미비로 특정 당사자의 주장·정보가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실 생략으로,

취재과정에서 정보원의 언행을 부풀렸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과대표현 사용으로, 그리고 정보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모습을 담거나 인터뷰를 내보냈다고 주장한 경우를 미동의로 구분했다.

#### (5) 오보의 유형

신청인이 주장한 오류의 분류 유형에 따라 객관적 오보와 주관적 오보로 분류했다. 기사에서 신청인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이름, 직위, 사실적 자료 등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또는 확인미비로 잘못된 사실 혹은 정보를 인용하여 보도한 기사를 객관적 오보로, 그리고 보도에 대해 허위 사실이거나 실제 발언한 것이 아니라고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거나, 기자가 임의로 관련사항을 보도하거나 취재 과정에서 주관적 해석을 통해 과대·과소 표현을 한 경우, 취재과정에서 습득한 정보 중 특정사항을 생략하여 보도한 기사를 주관적 오보로 분류했다. 또 보도하기를 원하지 않은 사실 또는 동의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기타오보로 분류했다.

### 3. 분석결과

#### 1) 조정·중재신청 기사의 중심주제

조정·중재신청 기사들을 중심주제별로 살펴보면 사건·사고·범죄 관련기사가 29건(61.8%)으로 신청기사건수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신청기사가 많은 중심주제는 정책·행정 분야로 10건(21.2%)에 이르고 있다. 이 두 중심주제는 전체 신청기사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의료, 교육, 정치, 문화와 관련 기사가 조정신청 되었으나 경제, 환경, 여성·복지, 스포츠, 연예·오락, 인물, 미담 등과 관련된 기사는 없었다.

이 같은 현상은 지역 언론 매체의 경우 지역의 정책이나 행정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사고·범죄와 관련된 기사를 주로 반영하는 지역 언론의 특성과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2) 조정·중재신청기사의 보도 공정(균형)성

신청된 기사의 보도내용이 균형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일방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경우가 36건(76.6%)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관계 속에서 한쪽의 의견이나 입장만 편향되게 보도한 일방적 내용의 경우가 쌍방향적으로 대립, 갈등 입장을 고르게 다루는 기사인 11건(23.4%)보다 월등히 많다.

이는 사건을 취재 보도하는 경우 사실 확인, 문제제기 등 전체적인 상황을 살피지 못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기사내용에서 골고루 반영하지 않을 경우 조정신청 대상이 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 3) 조정·중재신청기사의 정보원(news sources)의 활용출처

신청기사의 내용에서 어떠한 정보원(news sources)을 활용하여 보도를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기사의 정보원으로 개인을 정보원으로 활용해 보도를 하고 있는 경우가 20건(42.6%)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기관과 자료를 함께 활용한 경우가 13건(27.6%), 정보원의 활용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8건(17.0%), 개인과 기관, 자료를 모두 활용해 보도를 하고 있는 경우가 6건(12.8%)으로 가장 적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정보원(news sources)을 많이 활용할수록 조정 혹은 중

재 대상이 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반대로 개인만을 정보원으로 할 경우 기사의 부정확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 4) 신청인 주장의 오류유형

신청인이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내용 가운데 어떤 유형의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신청인이 보도내용 기사 가운데 이름, 직위, 사실적 자료 등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또는 확인미비로 부정확한 사실 혹은 정보를 보도하여 기사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라고 주장한 객관적 오류가 33건(70.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허위사실이거나 실제 발언한 것이 아니거나 기자가 임의로 관련사항을 보도했다거나, 취재 과정에서 주관적 해석을 통해 과대·과소 표현을 했다거나, 취재과정에서 습득한 정보 중 특정사항을 생략했다고 주장하는 주관적 오류는 11건(23.4%)이었으며,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보도가 되었다고 주장한 기타오류가 3건(6.4%)이었다.

신청인이 주장한 오류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오류들의 세부적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객관적 오류의 경우 사실 확인미비가 25건(75.8%), 잘못된 정보 확인이 8건(24.5%)으로 정보와 관련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경우가 전부다.

주관적 오류의 경우는 정보 확인을 하면서 기자가 임의로 정보를 잘못 확인한 경우 7건(63.6%)으로 가장 많다. 즉, 정보 확인을 하면서 객관적인 정보에 의존하기 보다는 기자가 주관적(편의적)으로 정보를 확인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경우로 기자에 의한 주관적 정보 확인이 상당한 오류를 범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은 과대표현의 사용이 3건(27.3%), 사실생략이 1건(9.1%), 정보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모습을 담거나 인터뷰를 내보냈다고 주장한 미동의를

3건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사실오류이든 주관적 사실오류이든 사실 확인과정에서 정보원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거나 상황이해와 취재보도에서 필수적인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오류가 발생한 경우가 40건(85.1%)으로 사실 확인과 정확한 정보 취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결과는 기자가 취재, 사실 확인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기사내용에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사고·범죄와 같은 속보성 기사의 경우 취재시간이 짧기 때문에 관련된 객관적 사실을 누락하거나 취재과정상 부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객관적 오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유에는 취재보도와 관련된 기자 개인의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다. 즉 기자의 취재활동에 있어서 사실 확인의 미비, 사건을 꿰뚫어 보는 선견지명의 부족, 상대방에 대한 오인, 뉴스 평가의 잘못 등 대부분 기자의 귀책사유와 관련이 있다. 또 기자의 귀책사유에서 벗어나 기자 개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마감시간이나 상업주의에 의한 경쟁, 취재관행, 취재원의 고의적 정보조작 등 언론의 산업적 속성과 관련된 구조적 요인이 취재보도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5) 중심주제별 세부오류 유형

조정·중재 신청된 기사의 중심주제에 따라 나타난 세부 오류 유형이 있다. 정치기사의 경우 모두가 잘못된 정보 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책행정 관련 기사의 경우는 사실 확인미비가 9(90%)건, 잘못된 정보 확인이 1건(10%)으로 사실 확인미비로 인한 오류가 절대적이다. 교육과 의료의 경우도 사실 확인미비가 각각 2건이다.

사건·사고·범죄 기사의 경우 잘못된 정보의 확인이 12건(41.4%)으로 가장 많고, 사실 확인미비가 11건(37.9%), 미동의가 3건(10.3%), 과대 표현이 2건(6.9%)이다. 문화관련 기사의 경우 1건이 사실 확인미비로 나타났다.

#### 6) 신청기사의 보도 균형성에 따른 세부오류 유형

보도내용이 일방적 혹은 쌍방적인가에 따라 주장된 오류의 세부내용이 어떠한가를 나타내 주고 있다. 보도내용이 일방적인 경우 오류가 나타난 경우가 36건(76.6%)이며, 쌍방적인 경우가 11건(23.4%)으로 일방적 보도에 더 많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도내용이 일방적인 경우 사실 확인미비가 19건(52.7%)으로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잘못된 정보 확인이 14건(38.8%)이나 된다. 즉 일방보도의 경우 사실 확인미비와 잘못된 정보 확인이 오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도내용이 쌍방향적인 경우에도 사실 확인미비가 6건(54.5%)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 차지하고 있다. 보도내용이 쌍방향인데 불구하고 미동의에 의한 오류도 3건(27.3%)이나 되고 있다.

보도내용이 일방적 혹은 쌍방적인지를 분류하였을 때도 객관, 주관적 사실에 따른 오보와 마찬가지로 사실 확인과 관련된 오보가 많다. 게다가 기사내용이 일방적일 경우 과도한 표현을 사용한 건수가 2건(5.6%)이 있고 특정 사실이 생략되기도 한다. 이는 기사가 일방적인 경우에 오보가 발생하는 세부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많이 내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7) 오보의 유형과 특성

조정·중재 신청된 보도기사들이 어떠한 오보유형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는지가 제시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본 오류의 유형이 오보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보도내용 가운데 이름, 직위, 사실적 자료 등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또는 확인미비로 부정확한 사실 혹은 정보를 보도하여 기사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라고 주장한 객관적 오보가 33건(70.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객관적 오보는 모두 사실 확인미비와 잘못된 정보 확인으로 인해 오보가 발생했다.

주관적 오보는 11건(23.4%)으로 기자가 정보 확인을 하면서 객관적인 정보에 의존하기 보다는 기자가 주관적(편의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보도해 오보가 된 경우가 많으며. 그 다음은 과대표현의 사용, 사실생략 등으로 인해 오보가 되고 있다.

정보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모습을 담거나 인터뷰를 내보냈다고 주장한 미동의를 3건(6.4%)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미동위에 의한 오보는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일어난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오보에 가깝다.

## V. 요약 및 결론

언론의 취재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본원적인 기능이다. 이 본원적인 기능은 언론매체와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언론매체가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올바른’ 보도를 제공하고, 국민은 언론매체가 성실하게 이 약속을 지켜줄 것이라는 데 합의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묵시적 합의의 존재는 바로 올바른 보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올바른 보도’는 흔히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언론의 취재보도에서 벗어나 그릇된 보도, 오보가 이루어져 언론의 신뢰는 물론 독자, 시청자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이 연구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 즉 오보라고 주장되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한 기사를 중심으로 그 유형과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년 동안 언론중재위원회 대구중재부에 신청된 47개의 모든 기사를 통해 그 유형과 특성을 찾아보고자 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얻었다.

첫째, 사건·사고·범죄 관련기사와 정책·행정 관련기사가 신청기사의 83%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언론의 특성과 매우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다. 즉 지역 언론의 특성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나 범죄, 지역의 정책이나 행정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지역 언론의 취재보도 임무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둘째, 신청기사의 보도 균형성에서는 일방적 보도가 대부분이며, 뉴스 정보원의 활용출처도 다양한 출처에 의존하기 보다는 주로 개인에 의한 정보에 의존하여 보도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신청인이 보도가 잘못 되었다고 주장한 오류의 유형 가운데는 객관적 오류(70.2%)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즉 이름, 직위, 사실적 자료 등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부정확한 사실 혹은 정보를 보도하여 기사내용이 잘못된 내용이라고 주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객관적 오류의 경우 사실 확인미비(75.8%)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잘못된 정보 확인(24.2%)으로 인한 오류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사실 확인미비로 인한 오류발생은 정책·행정기사, 의료, 교육, 사건·사고, 문화 등 대부분의 중심주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기자가 임의로 관련 사항을 보도했다거나 취재과정에서 주관적 해석을 통해 과대·과소 표현을 했다거나, 습득한 정보 중 특정사항의 생략 등으로 인한 주관적인 오류(23.4%)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관적 오류의 대부분은 정보 확인을 하면서 기자가 주관적(편의적)으로 정보를 확인해 오류를 범한 경

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오류가 많이 발생한 중심주제 역시 사건·사고·범죄 관련 기사였다.

넷째, 오보의 유형으로는 객관적 오보가 대부분이며, 객관적 오보는 사건·사고·범죄관련 기사와 정책·행정관련 기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주관적 오보는 4건의 오보 가운데 약 1건 정도로 나타났으며, 주로 사건·사고·범죄 관련 기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객관적 오보이든 주관적 오보이든 사실 확인과정에서 정보원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거나 상황이해와 취재보도에서 필수적인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오보가 발생한 경우가 40건(85.1%)으로 사실 확인과 정확한 정보 취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현상은 기자가 취재, 사실 확인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기사내용에 오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사고·범죄와 같은 속보성 기사의 경우 취재시간이 짧기 때문에 관련된 객관적 사실을 누락하거나 취재과정상 부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객관적 오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유에는 취재보도와 관련된 기자 개인의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자의 취재활동에 있어서 사실 확인의 미비, 사건을 꿰뚫어 보는 선견지명의 부족, 상대방에 대한 오인, 뉴스 평가의 잘못 등 대부분 기자의 귀책사유와 관련이 있다. 또 기자의 귀책사유에서 벗어나 기자 개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마감시간이나 상업주의에 의한 경쟁, 취재관행, 취재원의 고의적 정보조작 등 언론의 산업적 속성과 관련된 구조적 요인이 취재보도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보를 방지하거나 줄이려면 기자로서의 윤리적 책임의식은 물론 전문적인 지식의 함양과 가치관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자들에게 전문성 교육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대기자 제도의 활성화, 언론사 내에서의 지면

심의 기능을 고려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오보는 언론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언론에 의한 피해를 가져다준다. 오보는 독자, 시청자의 메시지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뉴스원(news sources)의 신뢰도에 대한 평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언론은 오보를 낳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즉 어떠한 경우라도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언론과 국민 간에 맺어져 있는 묵시적 합의를 지켜나가는 길이다.

## ■ 토론 내용

○ 권태인(사회자, 중재위원) : 주제발표해주신 정결진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와 관련하여나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현(대구경제신문 사장) : 꽤거리 취재가 무조건 나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때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결진(발표자, 중재위원) : 취재관행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사 실 제도도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취재한 것이 오보이면 다른 사람들도 확인 없이 보도하게 되어 모두 오보가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 이종학(대구상공회의소 홍보팀장) : 대구지역에 신청된 기사를 분석하여 오보된 기사유형에 사건 사고, 범죄기사, 행정 분야 순으로 많다고 하셨는데, 전국적인 상황은 어떠한지 궁금하고, 취재원과 언론사 관계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 언론중재위원회가 오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어떻겠는지 권합니다.

○ 정결진(발표자, 중재위원) : 전국적으로 분석하지 않았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데, 사건 사고 범죄, 행정 분야 등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청인과 언론사 관계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은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논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방지를 위해 위원회는 언론사를 상대로 사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자리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오보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기자 개인적인 성향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자 개인이 사실 확인을 위해 열심히 취재해야 하고, 언론사는 매일신문의 기사심의제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 김보상(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언론사의 정정보도문은 아주 작게 보도하여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정정보도문도 원 보도에 맞게 보도하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정정보도문의 형태나 크기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주(사무총장) : 정정보도문은 조정중재결과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위원회가 그 분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입장이 다른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용이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계속 연구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덧붙여 위원회는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상담교육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를 상대로 사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와 방안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혜숙(대구교통방송 방송편성제작국장) : 취재관행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행은 무엇인지 궁금하고, 오보를 한 후에 관행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정결진(발표자, 중재위원) : 일반적으로 관행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관행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주제

논문은 관행을 따르다 오보가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보가 나온 이유는 그런 관행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 정만진(대구시 교육위원) : 오보를 객관적 오보와 주관적 오보로 분류하였는데, 보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전제로 국민이 무엇을 알고 하는가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과 독자입장에서 보면, 알고 하고 하는 것을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정치권력이나 행정 권력에 의해 국민들이 소외되기도 합니다. 관변자료만 일방적으로 보도하면 국민의 관심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알권리 측면에서 오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구지역의 언론사들이 영향력이 큰데 비해 신청 건이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 정결진(발표자, 중재위원) : 우리 언론이 과연 대중이 알고 싶은 것을 보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관변자료만을 보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질문은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언론은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을 찾아 보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쪽에만 치우쳐 보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론도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공존하기 때문에 공적영역만을 강조할 수 없습니다.

관변자료만을 보도하면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보면 오보가 아닌가 하고 질문하셨는데, 관변자료를 그대로 보도하면 홍보가 될 수 있고, 잘 분석하여 보도하면 좋은 기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47건이지만 실제 3년간 신청된 건수는 77건입니다. 이중 중복된 기사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47건이 된 것입니다. 실제 대구지역의 신청 건수가 적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역사회의 문화적인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권태인(사회자, 중재위원) : 언론 현업에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최미화(매일신문 편집부국장) : 요즘은 관변자료를 보도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발표내용에 객관적인 오보유형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오보를 줄이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송고된 기사를 데스크에서 확인하고 보도하였는데, 현재는 전자조판체제가 갖추어져 송고된 기사를 여러 부서에서 검색할 수 있고 검증은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오보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조판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오보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정결진(발표자, 중재위원) : 규모가 작은 신문사들이 많이 신청됩니다. 이런 신문사의 기사는 사실미확인으로 오보가 많이 발생합니다. 1차적으로 취재기자가 열심히 취재하면 그 만큼 오보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취재일선에 계신 기자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신문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인터넷신문사들은 취재인력이 부족하여 사실 확인 없이 다른 신문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다 오보를 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종훈(경북뉴스 편집국장) : 보도자료를 받고 마감시간 때문에 확인취재를 못하고 보도하였는데, 오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제공한 측은 어떤 책임이 있는지 묻고 싶고,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슬자리를 갖는 장면이 보도되었다면, 해당 공무원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결진(발표자, 중재위원) : 보도자료를 보도한 언론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

다. 초상권과 관련된 질문은 사무총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주(사무총장) :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대로 보도하였다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겠지만, 초상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범죄사실 보도에서 범죄사실 자체는 공익성이 인정되지만 범죄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공익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술자리를 가진 공무원의 경우도 얼굴 사진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 김보상(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공무원도 근무시간에 식사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폭로성 목적의 보도는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성(대구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사무처장) : 과장보도도 오보로 분류되는지 묻습니다. 일전에 아파트 입주자들과 건설업자간의 분쟁이 있었는데, 기자가 한쪽 당사자의 입장만을 크게 부각시켜 보도하였습니다.

○ 정결진(발표자, 중재위원) :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한쪽만 크게 보도했다면, 광의의 의미에서 보면 오보입니다.

○ 김재성(대구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사무처장) : 기자가 상대방을 부추기어 다툼을 유발시키고 그것을 촬영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이런 보도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 정결진(발표자, 중재위원) : 그러한 보도는 궁극적으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 임경희(한국소비자연맹 대구경북지회장) : 주제발표하신 내용 중 오보 분석 결과 경제관련 기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에 아파트 건설 현장이나 기업의 관련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주인공은 아파트 건설회사입니다. 건설회사가 광고주로서 언론사에 군림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아파트 광고가 나오면 광고성 기사도 함께 나옵니다. 아파트를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불만스러운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도된 오보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결진(발표자, 중재위원) : 경제관련 기사는 오보일 확률이 적습니다. 그만큼 경제기사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고성 기사에 대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도 기업적인 측면이 있고 사적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독자입장에서 보면 의도된 오보일지라도 언론현실상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언론의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신문을 모두 구독하여 언론사가 재정적으로 안정되면 좋은 신문이 될 수 있고, 그런 구조적 오보도 사라질 것입니다.

○ 전용진(대구인터넷뉴스 사장) : 주제발표하신 내용 중 언론매체별 분류를 신문과 방송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인터넷매체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분류 시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가 제도권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정중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결진(발표자, 중재위원) : 과거에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분류에서 빠진 것입니다.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했는데 조정을 받아야 하는가 하고 문의하셨습니다. 언론보도와 관련이 있다면 조정중재의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도 보도기능이 있으므로 당연히 조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도권

에 진입했느냐하는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이찬우(대구중재부장) : 인터넷신문도 조정신청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법원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 지역에 없는 것은 관할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길성(광복회 대구지회 사무국장) : 광우병 쇠고기 문제에 대해 공영방송이 편파적인 방송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이 있었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주(사무총장) : 광우병 쇠고기와 관련하여 MBC PD수첩 보도에 대해 농림부가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재부는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막판에 결렬되어 중재부가 직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MBC가 이의신청하여 법원으로 자동소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 권태인(사회자, 중재위원) : 토론에 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마치기 전에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겠습니다.

○ 권성(위원장) :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정결진 교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활발히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전에 위원회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본부장의 상담과 교육에 대해 설명을 들겠습니다.

○ 오광건(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본부장) : 우리 센터에서는 오늘과 같은 토론회를 주관하고 제도에 관해 연구하며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과 사전예방차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연간 70여 차례 실행해 왔습니다. 주로 언론사측에 대한 피해예방차원의 교육이 진행돼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언론보도에 의한 잠재적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피해구제 관련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언론사에 대한 피해예방교육도 현재와 같이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추후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별도로 헤드릴 예정입니다만, 혹시 이 자리에 위원회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시민단체나 대학교, 기업체,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계시면 위원회 대구사무소나 서울사무처로 교육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알찬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권성(위원장) : 위원회가 오보예방차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계속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오보방지를 위하여 언론사 교육은 현재와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만,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피해구제 차원의 교육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것 중 정정보도문이 너무 작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정보도문의 크기나 제목 형태 등은 당사자간의 협의로 조정성립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하였음에도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재부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결진 교수께서 오보에 대해 객관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하여 주셨는데, 사실 미확인에 의한 오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주제논문은 위원회 오보예방교육의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대구지역의 신청건수가 왜 그렇게 적은가 하고 지적해주셨는데, 2005년도 대구지역 신청건수는 14건으로 부산 35건, 경기 87건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수치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을 해보아야 알겠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대구지역의 언론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정에 주력해 왔지만 중재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여 중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법원에 가면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데, 위원회에서 처리하면 짧은 시간 안에 비용 없이 처리할 수 있으므로, 특히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뉴스도 조정대상이 되고 있지만 지금은 포털이 취급하는 보도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생긴지 2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정중재의 노하우가 축적되었습니다. 분쟁을 법원에서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 외에 법원이외의 곳에서도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와 같은 기구를 갖거나 법률적 체계를 갖춘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법원이외의 대안적 분쟁해결기구로서 우리 위원회가 세계 속으로 전파되고 공동 연구를 통해 대안적 분쟁해결기구의 중심이 되어 국내뿐 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심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